

# 建築工事監理

李 明 煥

※ 本稿는 創立 13周年 紀念 學術討論 主題論文임

## I. 序 論

### 1. 建築家の 位置

人間이 生活을 嘗為해 나가는데 있어 衣, 食, 住는 三大基本 要素이며 其中에서도 住에 属하는 建築物이 차지하는 比率은 金錢的으로나 規模, 時間의 持續性 等에 있어서 衣나 食에 比해 越等히 크며, 그 時代의 政治, 經濟, 文化的 活動의 根據가 되기 때문에 時代性과 公益性 藝術性 等을 띠고 있음은 本人이 여기서 새 삼스럽게 論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아는 문제라고 보며 이렇게 重要한 建築物을 建築하기 為해 設計 監理業務에 從事하는 建築家 여러분의 任務는 그만큼 重要하다고 보며, 또한 이에 못지 않게 眈持를 갖쳐도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俗談이 있습니다만은 建築家는 죽어서 이름도 重要하지만 建築物은 永遠히 남아 社會에 持續影響을 주게 된다는 点을 잊어서는 않되리라고 生覺합니다.

### 2. 建築士의 現實

그러나 오늘날 우리 建築士의 現實은 어떠한 것일까요. 建築主로부터 立地 및 建築의 條件을 提示받아 제대로 設計를 했건 建築許可만을 얻어내기 為한 設計를 했건 이는 모두가 한개의 型式行為 또는 具備園書에 不過하다면 지나친 表現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各種 審議過程에서 果然 其 效果가 몇%나 있었는지, 버체는 建築主를 代身해서 園面보따리를 들고 굽실거리며 얻어낸 荣光스럽기 조차한 建築許可証을 잡아다 주면 그 다음부터 建築主되는 사람은 그렇게도 까다롭고도 어렵던 建築許可園書內容은 돌보지도 않은채 直接 마음대로 工事를 해치우거나 圖面도 없이 業者를 選定하여 壹億원짜리가 단 五千万 원에라도 建物만 된다면 하는式의 工事에 내가 그래도 工事監理者인데 하고 干涉를 하려든다고 工事의 質은 커녕 違法되었으니 是正해 달라고 하면 是正할 生覺은 故事하고 그것하나 適當히 못하는 無能한 建築士로 전락을 하게

될뿐 아니라 일많은 집장사는 干涉이 많다고 악에 다시는 찾아주지도 않게되는 이러한 現實은 그 누구의 責任이며 原因은 어디에 있으며, 結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才月은 멈추지 않고 흘러만 가고 오늘도 來日도 똑같은 타성에 젖어 是正되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將來에 歷史는 가혹한 審判을 내릴것이며 오늘의 建築士됨을 탓만 한다고 되지않으리라고 生覺합니다.

우리는 한시 바삐各自의 타성과 고집을反省하고 建築主인 国民을 탓하기에 앞서 建築士나 当局이나 協議團結하여 새로운 覺悟로 이러한 予盾點을 是正해 나가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予盾은 原因이 어디에 있는것일까?

干先 建築士의 業務는 무엇이며 責任의 限界는 무엇이며 하는式으로 하나 하나 찾아나가야 하리라고 生覺합니다.

### 3. 建築士의 業務範囲와 責任

建築士法 第19条 [業務內容] ①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 ② 建築士는 第1項의 業務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各号의 業務를 행할수 있다. 1. 建築物의 調査 또는 鑑定에 관한 事項 2. 建築에 관한 法会에 의한 範次履行 代理 등에 관한 事項]이라고 돼 있으며 또 同法 第20条 [業務上의 誠實等 義務] ① 建築士는 誠實히 業務를 수행 하여야 하며, 建築物의 美觀 機能 및 構造上 支障이 없도록 設計하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1977. 12. 31. 東項改正) ②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서 工事が 設計圖書 대로 実施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工事施工者에게 注意를 주어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그 注意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뜻을 建築主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終了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結果를 書面으로 建築主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

입니다.

以上에서 建築士의 業務範囲가 規定지어졌다 하겠습니다. 책임의範囲또한 大体적으로 規定지어졌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建築士의 主業務는 設計와 工事監理이며 附帶的으로 建築物의 調査 鑑定, 法令에 依한 節次履行代理라는 点에 留意를 하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生覺합니다. 即 다시 말해서 法会에 依한 節次履行代理가 主業務가 아니며, 우리가 흔히 建築物의 調査나 鑑定업무를 나는 하지 않는다 하는 式의 生覺을 해봄직하다고 生覺하며 建築許可나 받어 내는 것이 建築士의 主業務가 아니라고 生覺할 때 生되는 問題는 때로는 代行만을 專担하는 建築士를 生覺할 수도 있는가 하면 一律으로 建築士는 節次代理業務를 必須의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生覺하고 있는 現実과의 差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問題도 起起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建築士法第20条의 「業務上의 誠實等 義務」에 있어서 「建築物의 美觀, 機能 및 構造上 支障이 없도록 設計하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라는 改正事項은 建築設計의 基礎的인 問題라고 生覺되며 同 2項 工事監理者의 責任의 限界는 뒤의 工事監理 問題에서 說明됩니다. 建築士의 工事監理業務責任限界는 終局으로 建築主에게 報告함으로 끝나는 것으로 規定하였으나 建築法을 볼 것 같으면 違反工事에 對하여는 当該官署에 報告하지 않으면 그 責任을 벗어 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同法大統領令別表12号에서는 工事監理者는 違反내지 構造安全上의 責任만을 強調한 듯한 말하자면 一貫性이 欠如된 느낌을 주는 이러한 것은 調整의 必要가 있는 것이 아닌지.

## II. 工事監理

### (1) 工事監理의 定義

法에서는 「建築士法 第2条 [用語의 定義] 第4号 “工事監理”라 함은 工事が 設計図表대로 實施되었는지, 與否의 確認과 設計図書에 表示되어 있지 아니한 事項에 대한 施工方法의 指導 및 大統領이 정하는 事項을 確認하는 行為를 말한다. (1977. 12. 31 本条改定)」로 되 있으며 아직 施行令에서 무엇을 더 추가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建築士法 改正에서 보다明白히 言わせたまわるようです。参考로 日本의 能井定義氏著 「建築의 工事監理」에 의하면 「建築工事を 建設業者が 諸負施工할 境遇, 建築主로 부터 依頼받아, 其工事を 設計図書와 對照하여, 工事が 其設計図書와 같이 實施되고 있는지의 與否를 其者の 責任아래 確認하는 業務를 工事監理라 한다. 이는 建築士로서는 設計와 共히 重要한 業務이며 建築士法에 工事監理의 定義로 規定되었다」라고 説明하고 있습니다. 또 工事監理와 設計監理로 区分하여 「設計監理란 設計는 建築士法에서 말하는 設計図書의 作成이며 監理는 干先 業者選定에서 計約時까지 相湊에 協力하며 設計者의 立場에서 設計意圖를 分明히 하기 위해 詳細図作成, 工事監理나 業者가 作成한

重要한 施工図나 業者가 提出한 材料見本 其他의 承認, 設計變度의 处理等 外에 現場에 派遣된 工事監理者의 指揮監督, 工事費의 中間 또는 完拂의 承認等 모든 일에 參與하는 것이다. 그래서 日本建築家協會에서는 監理란 摘正한 工事契約에 協力하여 建築家의 設計意圖를 実現시켜 工事が 契約와 合致되도록 公正한 立場에서 業者를 指導하는데 있다」라고 말하며 「建築士法에서의 工事監理와 一般設計事務所에서 말하는 設計監理의 監理와는 多少 意味가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問題等을 比較해 볼 때,

여기서 가장 重要한 것은 業者選定에서 “工事契約時 建築士가 協力を 한다”는 問題라고 봅니다. 日本建築士法의 業務內容에는 이러한 句節이 包含되어 있어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図書에 週合한 工事を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建築士立會下에 工事契約을 하게 되므로 其設計図書는 價値를 発揮하게 되고 建築士의 責任도 더욱 무거워지게 됨으로 因한 建築士의 技術向上과 品位向上이 이루워지게 될 뿐 아니라, 設計나 工事監理의 實을 期할 수 있다고 봅니다.

### (2) 工事監理와 監督

日本鹿島研究所版 「建築의 實務」에서는 工事段階에 들어가서 建築家의 運營業務를 遂行하는 일을一般的으로 施工監理라 부르며 이 안에는 지금 까지의 工事監督이라고 부르는 業務도 包含된다. 또 社團法人 当儀協會版 「建築工事監督要領」에서는 「建築士法의 根據에서 法의 監督員의 業務는 施工計劃의範囲를 包含해서 다음 事項을 遂行하는 것으로 본다.

(1) 工程表의 檢討, 承認

(2) 各工事 種別마다 施工計劃書의 檢討, 承認

(3) 細部設計図, 原尺図의 作成 및 檢討, 承認

(4) 材料의 檢查 및 試檢

(5) 施工立會

(6) 施工檢查

라고 하였으며 日本建築協會發行 「四会連合協定 “工事清負契約款 解説”」中 監理技師의 自務를 (여기서 丙이라 함은 監理技師를, 甲은 建築主, 乙은 業者를 말함)

① 丙은 다음과 같은 일을 甲에 代身하여 行한다.

a. 乙의 提出하는 清負代金內沢書, 工程表 其他 仕様書에 明示한 書類를 調査 承認할 것.

b. 設計図 仕様書에 依한 施工에 必要한 詳細図, 現尺図等을 만들어 工程表에 따라 適當한 時期에 乙에 交付한다.

c. 乙이 作成하는 工作図, 模型案을 檢查하고 承認한다.

d. 施工一般에 對해 指導 立會한다.

e. 工事材料와 施工의 檢查를 하고 試驗時 立會한다.

f. 設計図, 詳細図, 現尺図와 仕様書에 충하여 即成

様査와 竣工検査를 하여 引教時 立会한다.

g. 乙의 清求하는 部成高清求書를 現場과 對照하고 技術的으로 調査한다.

h. 工期 또는 清負代金의 變及書類를 技術的으로 調査한다.

i. 当該工事와 関係있는 其他工事와의 綜合調整한다.

② 乙이 協議, 指導, 檢查, 立会, 意見, 承認等을 要清 할 때는 丙은 곧 이에 応한다.

③ 工事에 関한 当事者間의 通知, 協議는 丙을 通해서 行한다.

④ 丙은, 甲이 承認하는 代理人 또는 監督員을 들 수 있다. 이럴 때에는 事前에 乙에게 通知한다.

⑤ 監督者은 工事現場에 常駐하여 丙을 代理해서 施工을 監督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과 같이 工事監理者는 監督業務를 包含한 工事進行에 技術的 総指揮役割을 하게 된다고 生覺합니다.

### (3) 工事監理의 位置

工事監理者는 누구를 為해 있어야 하며 窮極의 으로 무엇을 為해 있어야 하는 것일까? 日本의 建築学会, 建築土会 建築協会 全國建設業協会의 連会協定에 依한 工事清負契約款에 依하면 (2-2 監理技師의 任務 參照) 建築主를 代身하여 工事契約戶行에 必要한 事務를 다루며 一般的으로는 法의 으로 建築主가 技術的 事務를 委任시키기 위해 工事에 介入시키는 建築主의 代理者이다. 그러나 工事監理者는 建築主의 代理者 役割만을 遂行하는 것이 아니라 工事의 經過過程을 忠実히 記錄하는 公証人的 性格을 띠며 나가서 建築主와 業者 사이에서 公平하게 契約을 尺行시키는 職務를 가진者라고 解釈한다. 위의相反되는立場이 되는 予盾은, 工事監理者가 技術的良心을 가지고 行動하는 學識과 技術, 人格等에 信賴를 받을 수 있는 者라면 建築主는 理解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表現은 가장 適切한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음으로 「工事監理者가 業務를 遂行함에 工事의 確認에 소홀함이 있어 工事에 하자가 생겼다 손 치드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清負業者의 責任이자 工事監理者는 其判断에만 責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工事監理者는 設計圖書를 잘理解하고 工事を 確認할 때 誤判이 없도록 細心한 注意와 正當한 態度로 專問知識을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對備해야 한다」라고 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重要한 問題라고 봅니다. 上의 内容은 建築土業務를 바로잡아 보기 위한 既略의 事이며 制限된 時間의 아쉬움을 남기며 省略합니다.

## III. 結論

### (1) 改善되어야 할 問題

a. 工事監理業務를 効率化시키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과 建築主의 利益을 為해 建築土가 監理業務에 들어가기

前에 工事契約時 參與할 수 있는 法의 뒷받침을 工事監理의 用語의 定義만 가지고는 實施하기 어려우므로 建築土法 第20条 [業務의 誠實等 義務] 内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b. 設計費 80%에 工事監理費 20%의 報酬比率은 實質의 工事監理를 行할 境遇 設計期間과 工事期間의 比率에 비춰보거나 經費面에서만 보더라도 이만 저만한 予算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工事야 어찌되든 設計나 論하고 말겠다는 式의 生覺을 갖게 되기 쉬워 建築土業務를 寄形化시키고 있는 原因의 하나라고도 生覺할 수 있으며 現在 大部分의 建築土들이 얼마 안 되는 監理費라고 經視하다보니 干洗도 못하는 工事監理의 責任만 지다가 奚罰만 받게 되는 要因의 하나라고도 生覺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現實에 맞도록 調整이 되야 한다고 보며 建築土業務量을 좀 먹는 結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日本 같은 나라에서는 文明의 程度差異에서 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予算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生覺됩니다.

### c. 契約의 分離

設計와 工事監理의 契約은 分離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其理由는 報酬의 現實화와 아울러 工事監理의 責任을 区分하는 것이 工事監理者의 責任感을 더 느끼게 되며 建築主亦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며 現在의 建築土業務의 혼돈상태를改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d. 工事監理者報告는 着工時に 한때 서울市府에서는 建築許可後 着工時に 建築主名義로 工事監理者와 業者選定報告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좋은 方法이 왜 變更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위의 列舉한 問題도 問題이나 여기에는 이外에도 問題가 있습니다. 建築許可後 一個年까지는 着工을 않어도 許可가 有効한데 着工도 언제 할지 모르는 狀態에서 建築許可도 나오기 전에 業者를 選定하지 않으면 안 되며 許可申請에 急하다보니 實地 工事는 乃終에 着工할 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干先 얼마 간의 돈을 주고 業者印章을 許可申請書에捺印 치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은 着工時 큰 紛爭問題가 되기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業者의 選定과 工事監理者 選定報告는 工事着工届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工事監理 專擔機構 設置

小規模工事에서는 別問題가 없다고 보나 漸次 建築技術의 發展과 各種科學의 發展과 規模가 커지는 建築工事의 工事監理도 이에 따라가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른 各種 試驗機器의 備置와 高度로 專門化되는 技術要員 確保等 專門化된 工事監理機構가 必要하게 되리라고 보며 이에 對한準備로서 建築土協会傘下에 公信力 있는 專擔機構가 다만 몇 개인가로 設置되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